第188回國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4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8年2月14日(土)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
2.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
3.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

審査된案件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鄭義和議員外 99人 發議) 1面
2.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李佑宰·李信範·鄭義和·宋勳錫·李完九·李源馥·權五乙·金洪信·金浩一·金贊鎭·權琪述·李在五議員외 30人 發議) 1面
3.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李美卿議員의 紹介로 提出) 1面

(19시32분 개의)

○委員長 李相得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許潛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鄭義和議員外 99人 發議)
2.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李佑宰·李信範·鄭義和·宋勳錫·李完九·李源馥·權五乙·金洪信·金浩一·金贊鎭·權琪述·李在五議員외 30人 發議)
3.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李美卿議員의 紹介로 提出)

(19시33분)

○委員長 李相得 의사일정 제1항 李信範 議員外 100人이 發議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李美卿 議員의 소개로 제출된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을 일괄해서 上程합니다.

이 2건의 법률안과 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은 그 내용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聽聞會制度改善小委員會 위원장이신 金浩一 委員 나오셔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金浩一 金浩一 委員입니다.

지금부터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가 심사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과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金文洙 委員, 金在千 委員, 李在五 委員과 본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2월11일부터 4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修正案을 提案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

먼저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정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人事聽聞特別委員會는 이를 상설화하는 경우 상설화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비상설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축소하며 국회에서 任命同意案 등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심사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개정

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國會法과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의 동시 제·개정을 감안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憲法上의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상설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심사한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셋째, 人事聽聞特別委員會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수는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議長이 선임하도록 하여 교섭단체간 배정비율을 명확히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선임요청을 하도록 하되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에 있어 인사청문회의 개최여부를 임의적 사항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하고,

여섯째,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公職者倫理法에서 규정된 비공개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동 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은 다른 법률과 상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8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정부 등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條文整理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그 적격성에 관하여 국회의 의견을 듣는 공무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이를 국무위원 및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축소하고 기타 일부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國會法 개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국무위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으로 하고,

둘째, 대통령의 의견요청에 대한 국회의 회신기한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의결토록 한 안제4조제2항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한 안제5조는 國會法에 수정하여 규정토록 함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넷째, 違憲論難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 案 제6조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가 심사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과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得 수고하셨습니다.

請願과 소위원회 審査報告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討論과 逐條審査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의가 없으시면 이를 생략하고 바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은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통과된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 반영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나 국민이 우리 國家의 중요한 職位를 맡으실 분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 법 절차에 의해서 聽聞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여론과 또 국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국회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전 의원 이름으로 요청이 와서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들과 같은 운영위원회 참석멤버이신 국민회의와 자민련 위원님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담아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도 전번 領袖會談에서 정치적으로 이 법과 또 政府組織法을 6인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협상에 임하시면, 또 협상을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6人委員會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경제에 관한 법안은 많은 분들이, 어제 행정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같은 데는 새벽2시 3시까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우리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법안을 지금 현재 오늘 끝내고자 합니다. 단지 남은 것이 聽聞會法과 정부의 行政組織改革法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6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서 조속히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안에 참여하셔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參 照)

(李美卿議員)

「국회법」개정청원' 소개의견 설명

한나라당 소속 이미경의원입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청원한 '국회법개정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동의의 가부만 표결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하여 해당 고위공직자의 자질, 인격, 과거행적, 업무능력 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한정하여 국회법에 의하여 인준청문회가 개최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인사청문특별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20명 내외의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인사청문의 대상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국한하고,

인사청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같은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세동)

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 검토보고

이미경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로부터 1998년2월12일 제출되어 동년 2월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원소개의원의 의견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단순히 임명동의의 가부만에 한하여 표결할 것이 아니

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고위 공직자의 자질·인격·과거행적·업무능력 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인사청문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2개의 청원안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하여 인준청문회가 개최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 밖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고위 공직인사의 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의해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여론을 시민단체가 수렴하여 이와같이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2. 청원요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그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3. 검토의견

동 청원의 내용은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청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동 청원의 취지가 포함된 국회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의임명에따른인사청문회의실시에관한법률안이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될 경우, 동 청원의 취지가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달성되는 경우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出席委員

李相得　金浩一　權琪述　權哲賢
金文洙　金在千　金贊鎭　金忠一
白承弘　宋勳錫　李在五　林仁培
林鎭出

○委員아닌出席議員

李信範　鄭義和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韓世東
立法審議官　安秉玉

【報告事項】

○請願提出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로부터 李美卿議員의 紹介로 提出)

2월14일자 회부됨.